

안전분야-일반자료

2019-전남본부-1534

조선업 직종별 안전보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스키드로더 안전관리모델

2019



목 차

I . 스키드로더 개요	1
1. 개요 및 동작방식	3
2. 작업용도 및 부속장치	6
3. 방호장치 및 안전조치	9
II . 스키드로더 재해발생현황	13
1. 발생형태별 재해현황	15
2. 세부 재해발생 내용	16
III . 스키드로더 작업안전	21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24
2. 신호방법	31
3. 작업안전수칙	34
4. 교육 및 자격기준	39
IV . 작업안전표준 및 위험성평가	41
V . 현장 우수사례	51
[참고자료] 관련법령 및 지침 등	55

I

스키드로더 개요



I 스키드로더 개요

1. 스키드로더 개요 및 동작방식

스키드로더(Skid loader 또는 Skid-steer loader)는 로더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4륜 구동방식이며 특이한 조향방식과 사이즈 등의 장점으로 농업, 건설업, 조선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다.

특히, 조선업에서 사용하는 스키드로더는 어태치먼트에 따라 지게차, 로더, 청소장비, 쇼트기 등 다양한 장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게차 등과 마찬가지로 운전을 위해서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가. 스키드로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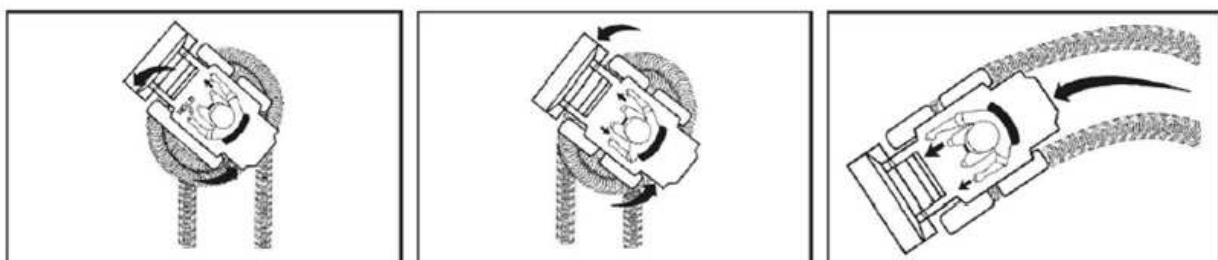
- | | |
|------------|------------|
| ① 전조등 | ② 후미등 |
| ③ 운전석(출입문) | ④ 손잡이 |
| ⑤ 로더 암 | ⑥ 로더 암 실린더 |
| ⑦ 버킷 | ⑧ 타이어 |

[그림 1] 스키드로더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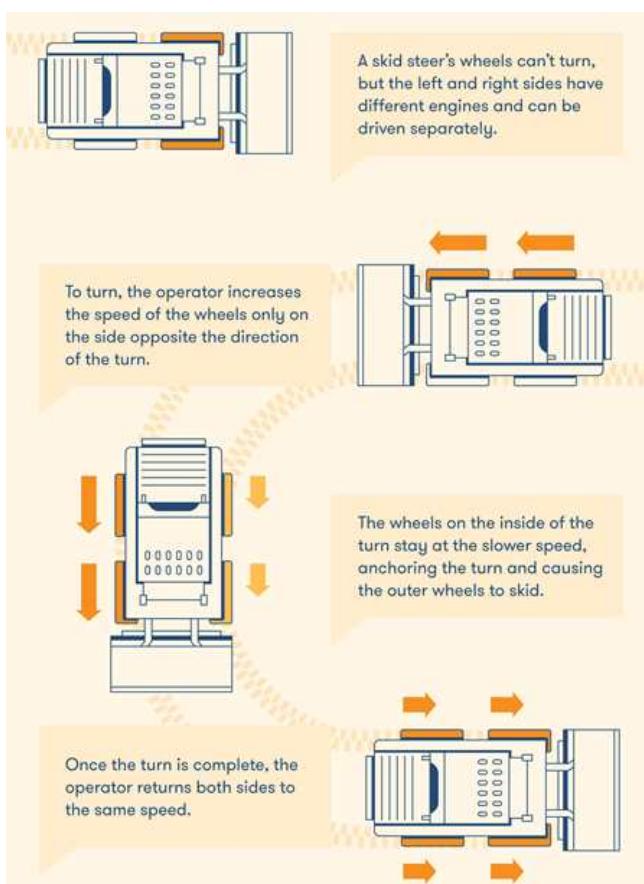
나. 스키드로더 동작방식

○ 스키드로더의 방향전환 방식

- 스키드로더는 일반적인 차량, 지게차 등과 다른 방식으로 조향이 이루어진다. 전륜, 후륜이 좌우로 움직이며 방향을 전환하는 일반적인 조향방식과 달리, 스키드로더는 전륜, 후륜의 좌우 움직임 없이 바퀴의 속도조절을 통해 방향을 전환한다.
 - ☞ 이에 따라 스키드로더는 거의 제자리에서 미끄러지듯 방향을 전환하며 바닥과 마찰에 의해 바퀴 자국이 생성되기도 한다.



[그림2] 스키드로더의 방향전환(왼쪽부터 피벗턴, 반대 방향회전, 서행 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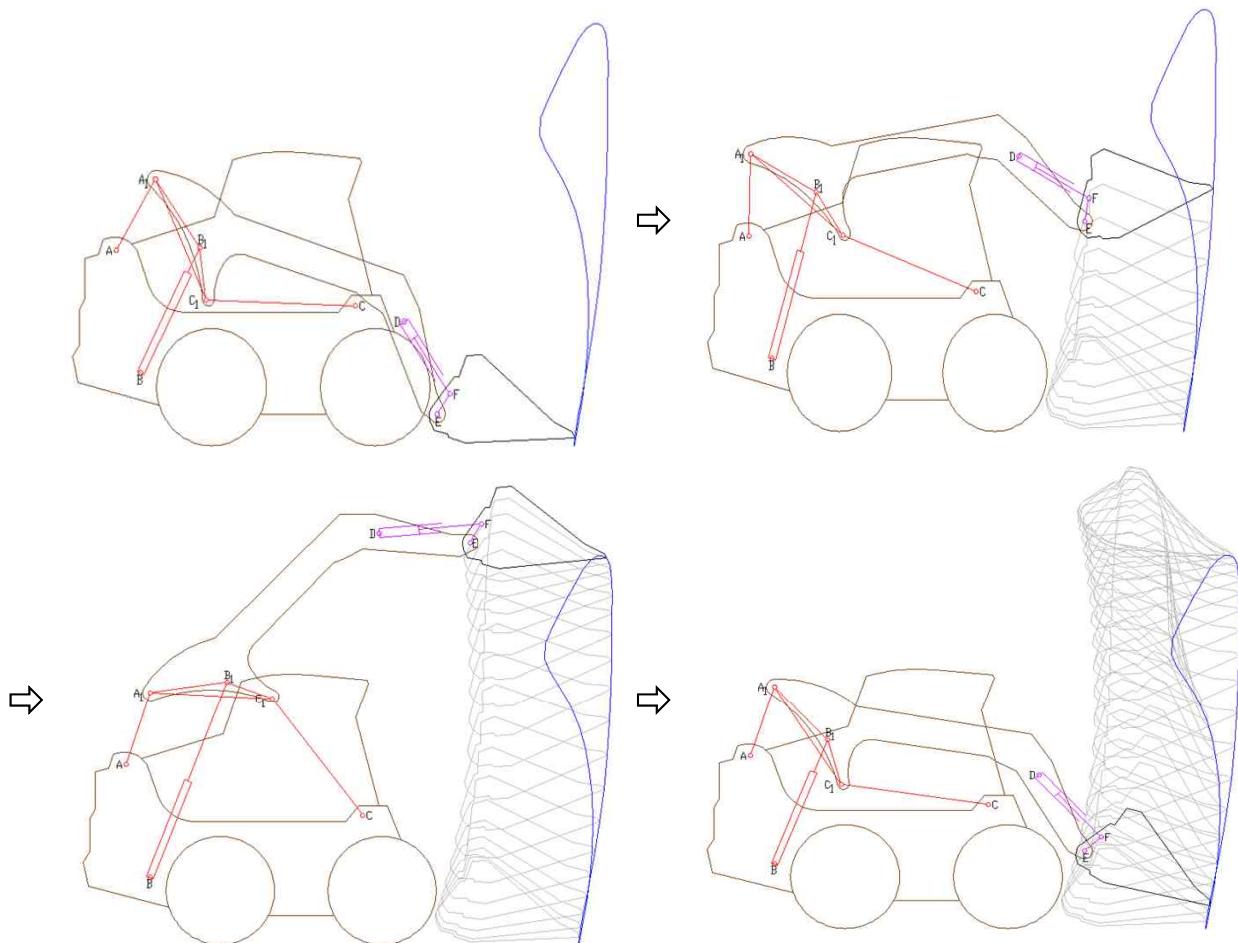


[그림3] 스키드로더의 방향전환(서행 회전 상세)

- 1) 스키드로더는 바퀴가 회전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좌우측이 별도 엔진으로 구성되어 각각 움직일 수 있다
- 2)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하고자 하는 반대측 바퀴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
- 3) 회전반경 내측 바퀴는 외측 보다 낮은 속도로 움직이며, 방향전환의 기준점이 된다
- 4) 방향전환이 끝나면 좌우 양측 바퀴의 속도를 동일하게 한다

○ 스키드로더 암의 움직임

- 스키드로더에서 주된 기능을 하는 부분은 로더 암이다. 일반적인 스키드로더의 부하를 똑바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올 때 쏟아내는 형태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버킷 끝이 호선을 그리며 움직인다.
- ☞ 이와 같은 스키드로더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야 및 출입구 간섭 등의 단점도 있다.



[그림4] 스키드로더 암(버킷)의 움직임

2. 스키드로더 작업용도 및 부속장치(Attachment)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스키드로더 부속장치는 다양하다. 버킷(Bucket), 포크(Fork), 클램프(Clamp) 등 작업 특성에 따라 수십 종류의 부속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중 조선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부속장치와 용도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 그리트 회수 작업(버킷)

- 스키드로더가 조선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그리트(Grit, 선박의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알갱이)회수 작업이다. 블라스팅이 끝난 후 블럭이 반출되면 바닥에 쌓인 그리트를 재사용하기 위해 긁어 모으는 작업이며 부속장치는 주로 버킷을 사용한다.

* 블라스팅을 통해 도장작업 전 선박 블럭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도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



[사진1] 그리트 회수 작업

○ 서포트 운반·배열작업(클램프, 버켓, 포크 등)

- 그리트 회수작업과 함께 스키드로더가 가장 많이 쓰이는 작업이다. 스키드로더의 높이, 좁은 회전반경 등의 장점을 토대로 선박 블록의 하부에서 서포트(지지대)를 배열하고 미세조정을 한다. 부속장치는 조선소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클램프, 버켓, 포크 등) 사용한다.



[사진2] 서포트 운반·배열작업

○ 반목 운반·배열작업(버켓, 클램프)

- 선박블록의 정확한 지지를 위해 서포트와 블록 사이에 목재 등을 배치하는 작업이다. 인력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반목을 버켓으로 대량 운반하거나 클램프로 대략적인 배열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사진3] 반목 운반·배열작업

○ 블라스팅 작업(블라스팅 머신)

- 선행탑재(Pre-Erection)를 수행하여 대형화된 블록의 용접부위는 대부분 인력에 의해 블라스팅 작업을 실시한다. 블록의 대형화에 따라 블라스팅 작업의 방법(위 보기 작업) 및 공간(실외)에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부속장치이다. 스키드로더에 블라스팅 머신을 연결하여 대형블록 용접 연결부위에 블라스팅 작업을 실시한다.



[사진4] 블라스팅 작업

3. 스키드로더 방호장치 및 안전조치

스키드로더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한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부착해야하는 방호장치는 전조등, 헤드가드 2가지이나, 그 외에 제조사에서 사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제공하는 안전장치 및 조선소에서 자체 설치한 안전장치 등을 알아보겠다.

가. 법적 방호장치

○ 전조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7조)

- 스키드로더는 야간 등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조도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헤드가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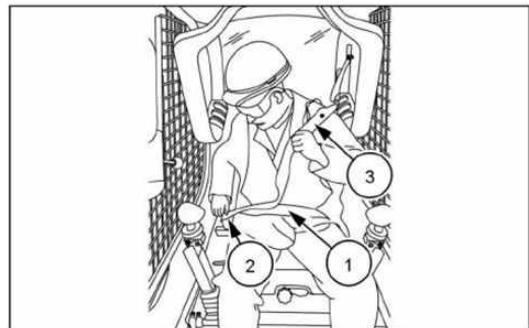
- 헤드가드(Head guard)는 스키드로더를 사용한 작업 시 운전자 위쪽으로부터 화물의 낙하에 의한 운전자 위험방지를 위해 머리위에 설치하는 덮개를 말하며, 운전자 머리에 화물이 낙하하더라도 안전하고 견고하여야 하고 운전자의 운전조작 등 작업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추가적인 안전조치(제조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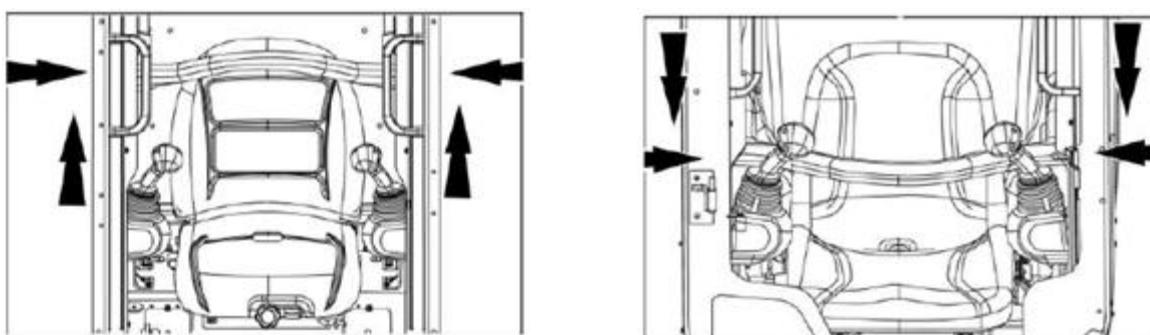
○ 안전벨트

- 안전벨트는 스키드로더의 전복 및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운전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좌석 안전장치 바

- 스키드로더는 로더 암이 오르내리는 구동부 사이에 운전석 출입구가 배치되어 있다. 운전자가 탑승 혹은 하차할 때, 오조작에 의해 장비가 움직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좌석에 탑승 후 안전바를 내리는 경우에만 스키드로더가 구동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 후방접근 경보장치

- 스키드로더 후진 시 뒷면 근로자의 통행 또는 물체와 충돌로 빈번히 발생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방접근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 경보방식에는 경고음(소리)와 Display(화면표시) 방식이 있다.



○ 주요 구조부 위치식별을 위한 형광테이프 / 도색

- 조명이 어두운 작업장에서 스키드로더의 위치와 움직임 등이 식별 가능하도록 경광등을 부착하거나 장비의 주요 구조부^{*}에 형광테이프 부착 또는 도색을 실시한다.
 - * 스키드로더 암, 후면, 바퀴 등 위험부위에 형광 테이프 또는 도색을 실시



○ 주행 경고음

- 스키드로더의 주행 또는 후진 시 주변 작업자에게 장비의 위치를 알리고 부딪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메시지 또는 경고음을 발생시킨다.



○ 전&후방 카메라

- 스키드로더 전방 및 후방 시야간섭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무선)전·후방 카메라를 설치한다.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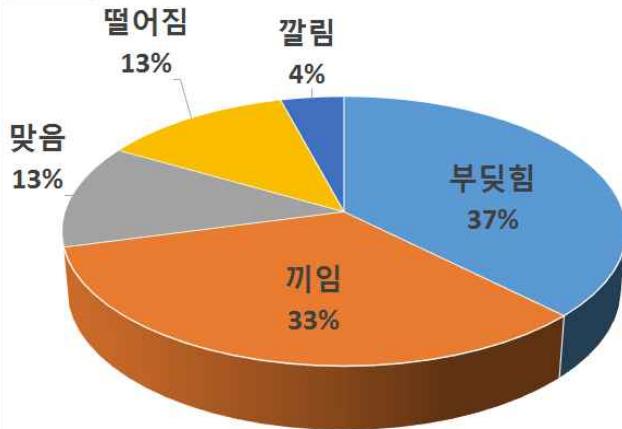
스키드로더 재해발생 현황



1. 발생형태별 재해현황

가. 사고부상 현황(2009~2018년)

구분	발생건수
계	24
부딪힘	9
끼임	8
떨어짐	3
맞음	3
깔림	1



* 최근 10년간(2009~2018) 전국 조선업에서 발생한 스키드로더 관련 재해를 분석하여 작성

- 위와 같이 최근 10년간 조선업에서 발생한 스키드로더 관련 사고재해는 총 25건으로 끼임(8건), 부딪힘(8건) 두 가지 유형이 전체 발생형태의 절반 이상(16건,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키드로더 관련 사망재해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음

* 공단 중대재해 전산기록 조회 가능시점(2002년부터 2019년 현재) 내 0건 발생

나. 질병이환 현황(2009~2018년)

구분	발생건수
계	4
근골격계질환	3
소음성난청	1



- 최근 10년간 스키드로더 작업 관련 질병이환자는 4명이며, 근골격계질환(장시간 좁은공간 내 운전, 갑작스런 충격 등), 소음성 난청(장기간 소음 노출)이 발생했음

2. 세부 재해발생 내용

아래 세부 재해발생 내용은 요양 승인 건을 대상으로 정리하였으며, 재해 발생 형태 및 내용은 제한된 정보에 따라 사실과 일부 다를 수 있음

부딪힘(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자와 부딪힘◦ 중량물 취급◦ 구조물 등에 부딪힘◦ 주변 장비와 부딪힘
----------------	---

작업구분	재해발생 내용
작업자와 부딪힘	스키드로더 후진(출차) 중 주변에서 대기하던 작업자와 부딪힘
작업자와 부딪힘	스키드로더 신호수가 작업 종료 후 이동 중 스키드로더와 부딪힘
작업자와 부딪힘	스키드로더로 고임목 운반 중 뒷걸음으로 이동하던 신호수와 부딪힘
주변 구조물 등에 부딪힘	스키드로더 운행 중 레일과 부딪혀 운전자 내부충격
주변 구조물 등에 부딪힘	스키드로더 조작 실수로 암(Arm)이 움직이면서 주변 구조물과 부딪힘
주변 구조물 등에 부딪힘	운반중이던 서포트가 돌출부에 걸려 운전자 내부충격
중량물 취급	스키드로더로 H빔을 지지해 정반 제작 중 H빔이 떨어지면서 차체가 흔들려 운전자 충격
중량물 취급	과도한 중량물 취급으로 스키드로더가 앞으로 기울자 급하게 암(Arm)을 조작하면서 차량 지붕에 머리를 부딪힘
주변 장비와 부딪힘	트랜스포터가 블록 반출작업(후진) 중 작업대기(정차) 상태의 스키드로더와 부딪혀 전복

○ 부딪힘 재해의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다.

- ▣ 주행 또는 작업 중 주변 작업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힘
- ▣ 주행 또는 작업 중 주변 구조물과 부딪힘
- ▣ 중량물 취급 중 중심을 잊어 장비 내부 충격
- ▣ 주변의 장비(트랜스포터 등)와 부딪힘

스키드로더는 유사 차량계 장비와 마찬가지로 작업자와 부딪히는 경우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후진으로 주행하는 경우 대부분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전방 주행 또는 회전(방향 전환) 시에도 작업자와 부딪힐 우려가 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해당 공간 내 출입금지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유도자의 경우 통상 트랜스포터 유도자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작업의 경중에 따라 별도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안전조치로는 시야확보를 위한 안전장치(카메라 등), 주변 장비와의 통행 우선순위 결정 등이 있다.

끼임(8건)

- 주변 작업자 끼임
- 외부 충격으로 운전석 내 끼임
- 로더 구동부(암) 및 고정부 사이 끼임
- 정비(점검) 중 끼임

작업구분	재해발생 내용
주변 작업자 끼임	철반목 상부의 나무반목 정리 중 스키드로더가 밀어내는 철반목 사이에 발이 끼임
주변 작업자 끼임	작업자 이동 중 후진하는 스키드로더와 부딪혀 넘어지며 신체 일부가 끼임
주변 작업자 끼임	스키드로더 클램프로 철판을 잡는 과정에서 철판에 유동이 생겨 손가락이 끼임
외부 충격으로 운전석 내 끼임	서포트 운반작업 중 블록에 매달린 체인에 로더 케빈이 걸려 내부 충격에 의해 발등이 끼임
외부 충격으로 운전석 내 끼임	쇼트장 내 그리트 수거작업 중 주변 족장구조물에 부딪혀 스키드로더 출입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발목이 끼임
로더 구동부(암) 및 고정부 사이에 끼임	스키드로더에 탑승한 상태로 캔버스도어 조작 중 안전바와 로더 암 사이에 끼임
로더 구동부(암) 및 고정부 사이에 끼임	스키드로더에 탑승하여 버킷을 내리던 중 로더 암과 자재 사이에 발이 끼임
정비(점검)	엔진팬 점검 중 회전하는 엔진 팬에 손가락이 끼임

○ 끼임 재해의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운반 화물이나 스키드로더 자체에 의해 주변 작업자 신체 일부가 끼임

☞ 외부 구조물 등과 부딪히는 충격에 의해 운전석 내부에서 끼임

☞ 로더 구동부(암 등)와 고정부(프레임 등) 사이에 끼임 등

끼임 재해의 경우 부딪힘과 마찬가지로 신호수 등 주변 혼재 작업자와 접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로더의 구동부(암)와 고정부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스키드로더 운전 시에는 암 구동부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출입문 설치 및 폐쇄)하고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시동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떨어짐(3건)

◦ 블록 작업자 떨어짐

◦ 스키드로더 상부작업

작업구분	재해발생 내용
블록 작업자 떨어짐	스키드로더가 블록 하부 A형사다리를 옮기면서 A형사다리로 통행하려던 작업자가 떨어짐
블록 작업자 떨어짐	쇼트장 내 그리트 회수작업 중 블록 상부 작업자의 에어호스가 걸려 블록 위에서 떨어짐
스키드로더 상부작업	블럭 H-Beam 고박작업 중 2m높이의 스키드로더 위에서 떨어짐

○ 떨어짐 재해의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주변 블록과 혼재작업 중 작업자 떨어짐

☞ 스키드로더 상부작업 중 떨어짐

스키드로더는 비교적 용이하게 블록 하부로 통행한다. 이에 따라 블록 상부 작업자는 스키드로더에 의한 위험에서 자유롭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위의 재해사례와 같이 간접적인 위험요소는 존재한다. 혼재 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스키드로더 운전자가 직접 또는 신호수에 의한 위험요인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게차 등과 마찬가지로 스키드로더는 승차석 외에 탑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맞음(3건)

◦ 운전석으로 떨어진 화물에 맞음

작업구분	재해발생 내용
운전석으로 떨어진 화물에 맞음	블록 하부로 서포트 운반 중 서포트 위에 올려진 나무반목이 스키드로 더 운전석으로 떨어져 맞음
운전석으로 떨어진 화물에 맞음	스키드로더로 반목 높이조절 중 서포트 상부 반목이 떨어져 맞음
운전석으로 떨어진 화물에 맞음	스키드로더로 서포트 운반 중 서포트 위의 나무 반목이 블록 러그에 걸려 운전석으로 떨어짐

○ 맞음에 의한 재해발생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취급 화물이 운전석으로 떨어져 맞음

최근 10년간 발생한 맞음 재해 3건 모두 반목 취급작업 중 발생하였으며 재해 내용으로 볼 때, 운전석 출입문을 닫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출입문의 유리가 파손되면서 반목 등이 운전석을 덮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을 창살 등으로 보강한 후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시야 간섭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깔림(1건)

◦ 주변 구조물에 깔림

작업구분	재해발생 내용
주변 구조물에 깔림	스키드로더로 그리트 제거작업 중 블록에 설치된 사다리와 부딪혀 사다리가 무너지며 깔림

○ 깔림 및 무너짐에 의한 재해발생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스키드로더 사용 작업 중 부딪히면서 무너진 구조물에 깔림

스키드로더 사용 작업 시 버킷 등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시야를 확보하여야 하며, 주행 또는 회전 시 주변 구조물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III

스키드로더 작업안전



III 스키드로더 작업안전

스키드로더 사용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시작 전 점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교육 및 자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 장은 현장에서 위의 내용을 실제 적용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키드로더 운전작업 시 필수 확인 산업안전법령]

항목	주요 조치내용	법안전규칙 조항
사용 전	①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	규칙 제35조
	② 스키드로더 사용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규칙 제38조
	③ 전조등 설치(적절한 조명이 있는 장소 제외)	규칙 제197조
	④ 운전석에 물건 등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헤드가드 설치	규칙 제198조
사용 중	① 운행 중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규칙 제199조
	② 스키드로더 작업구역 내 출입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 유도자 배치 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규칙 제40조)	규칙 제200조
	③ 스키드로더의 승차석 외 탑승금지	규칙 제202조
	④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규칙 제203조
	⑤ 주용도 외 사용 금지	규칙 제204조
사용 후	① 수리·점검작업 시 암 등의 하강 방지를 위한 안전지주 사용 및 작업지휘 등	규칙 제205조, 규칙 제206조
	② 운전위치 이탈 시 버킷 등을 지면에 내리는 등의 조치	규칙 제99조
기타	①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법 제31조
	② 스키드로더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 필요한 조치	법 제33조
	③ 해당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자가 운전	법 제47조
	④ 제한속도의 지정	규칙 제98조

※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관련 법령내용 참조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스키드로더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스키드로더의 조선소 내 사용 용도를 미뤄 볼 때 추락·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하는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준하여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물과 운행경로 상태 확인
- 스키드로더 작동상태 점검여부 확인(일상, 정기 등)
- 작업관련자 자격 및 교육, 작업계획 준수여부 확인

운반화물의 상태

- ☞ 스키드로더의 능력대비 화물중량 적정여부
- ☞ 화물의 형상 등에 따른 시야간섭 및 작업방법
- ☞ 파레트, 운반구 등의 점검(해당 시)
- ☞ 화물 특성에 따른 취급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운행경로의 상태

- ☞ 스키드로더(또는 화물)의 폭, 높이 대비 통로확보 여부(작업장소 넓이)
- ☞ 통로상 장해물 제거여부
- ☞ 지반의 부동침하 및 경사로 작업 여부
- ☞ 운행경로 상 작업상황 및 제한속도 지정 등을 중점 확인해야 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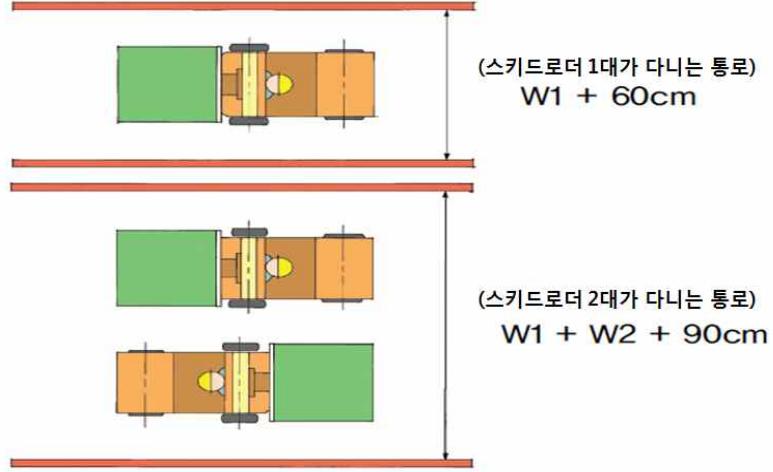
- 일상작업은 작업개시 전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차량계 건설기계(스키드로더)의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 수시작업은 매 작업개시 전

나. 운행경로

○ 운행경로의 폭

- 스키드로더 1대가 다니는 통로는 해당 장비의 최대 폭에 60cm이상,
- 스키드로더 2대가 다니는 통로는 해당 장비 2대의 최대 폭에 90cm이상의 여유를 확보한다.

※ 운반 화물의 폭도 스키드로더의 최대 폭으로 고려한다.



○ 운행경로의 구조

- 화물의 하역장소는 평坦해야하며, 스키드로더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 운행통로는 지반이 고르고 평탄해야 하며 갓길의 붕괴에 의한 전복, 전락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 언덕 등의 경사로에는 운행 중 전복·전락의 위험이 없도록 가이드 레일을 적절히 설치한다.

다. 운반화물

○ 화물의 무게 및 안정도

- 조선업의 스키드로더는 지게차와 달리 정격하중 이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그럼에도 제작사의 매뉴얼에 명시된 로더 암 상승 높이에 따른 안전하중, 안정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 검토를 통해 인지하여야 한다.

* 스키드로더는 작업장소의 제약에 의해 주로 지게차의 대용으로 사용되며 다른 화물 역시 그리트, 서포트, 반목 등으로 대체로 중량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

○ 화물의 형상(부피)에 따른 운반방법

- 스키드로더를 이용한 화물 운반 시 운반화물의 무게(안정도)뿐만 아니라 형상(부피)을 고려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키드로더 작업 시 운반 화물에 의해 빈번하게 시야 간섭이 발생하므로 시야 확보를 위한 보조장치(전·후방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게차 등 타 장비를 운용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운반화물 종류(형상)에 따른 운반기준 예시

운반물의 종류	화물 형상	운반기준
입자 형태의 화물 - 그리트(Grit)		(사용 부속장치 : 버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전 공간 내 장애물 및 작업자 확인 ○ 조명 확보 및 보호구 착용 ○ 작업장 주변 T/P 또는 블럭 간섭여부 확인
길이가 길고 시야를 가리는 화물 - 서포트(Support)		(사용 부속장치 : 클램프, 포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가 먼 경우 유도자 필수 배치 ○ (T/P공통)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서포트 배열 ○ 급회전에 따른 운반물 이탈 유의
목재, 철재 집적물 - 나무반목, 철반목		(사용 부속장치 : 버킷, 포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물의 낙하 유의 ○ 포크 사용 시 파레트에 담아 운반 ○ 요철구간 서행운전
목재, 철재 개별화물 - 나무반목, 철반목		(사용 부속장치 : 클램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작업자와 혼재작업 금지 ○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반목 설치 ○ 운반물의 낙하 유의
Open구조로 운전자와 시야확보가 가능한 운반물 - 이동식 작업대		(사용 부속장치 : 포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크 전용 운반구에 포크 삽입 ○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유도자 배치 ○ 급회전에 따른 운반물 이탈 유의

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마. 정기점검

- 사업주는 스키드로더에 의한 재해예방과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사 및 자체 보유한 정기점검기준(유지보수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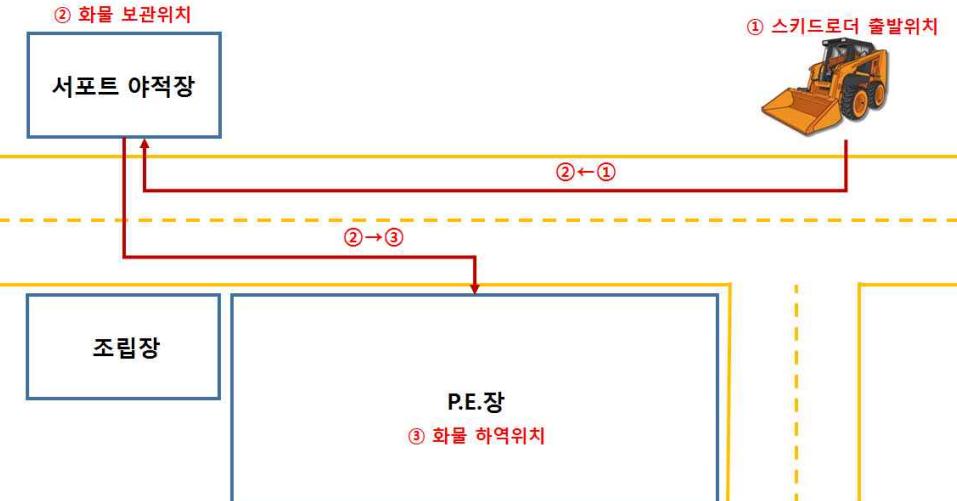
스키드로더 작업계획서[작성예시]

1. 작성일	2019. 09. 16.(월)		2. 작성자	지휘자	3. 작업명	서포트 운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서포트 작자장소 이동</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서포트 운반 (블록 하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서포트 위치 조정</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복귀</div> </div>												
4. 장비에 의한 작업개요 및 방법			<p>서포트를 블록 하부에 지지하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p> <p>100m이상 운반이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장소 특성상 장비와 블록간 간섭(높이) 유무 확인 필요함</p>												
5. 작업기간	2019년 09월 16일(월) ~ 2019년 09월 16일(월)									6. 작업인원	2명				
7. 작업시간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8. 화물의 품명 및 수량	품명		화물의 자세		형상			수량			1개의 중량				
	17. 화물 형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참조														
9. 화물의 성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높이 쌓임 <input type="checkbox"/> 산적(흐트러진 화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외(시야를 가리는 화물)						이동시키는 거리(100) m								
10. 패렛트 등의 점검	중량에 대한 충분한 강도			갈라진 금·변형의 유무				못 등 돌기물의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부							
11. 장비의 종류 및 성능	차량번호	능력 (최대하중)		작업 개시전 점검 상황		월간 검사실시일			정기검사 실시일						
	전남04나0000	2.5t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부		2019년 09월 10일			2019년 09월 10일						
				양·부		년 월 일			년 월 일						
12. 제한 속도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을 고려한 속도				작업장소의 제한속도 계시 유무										
	(10) km/h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무										
13. 작업 지휘자	성 명		직제상의 지위				해당 작업의 경험								
	지휘자		직장				(15)년								
14. 운전자	성 명		면허 번호		자격 취득일					해당 작업의 경험					
	홍길동		00A0948102		2009년 10월 16일					10년					
15. 유도자	배치 유무		성 명		신호 규정					대피 장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무		지휘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무					
16. 관계자 교유(확인)	실시일		2019. 09. 16.		확인자					부서장 (서명)					
	관계근로자		홍길동 (서명)		(서명)					(서명)					

17. 취급화물 및 안전 작업방법

품명 (제원 : LxWxH)	화물 형상 (사진)	수량 (EA)	단위별 중량 (Ton/EA)	안전 작업 방법
서포트 (0.4mX0.4mX1.8m)		10	0.7	유도자 배치 신호수 통제 운반물 이탈 유의

18. 운행경로

			
< 보관장소 >	< 운반장소(도착지) >		
 <p>② 화물 보관위치</p> <p>① 스키드로더 출발위치</p> <p>③ 화물 하역위치</p> <p>서포트 약적장</p> <p>조립장</p> <p>P.E.장</p> <p>②→③</p> <p>②→①</p>			
< 운반경로 >			
작업장소의 넓이	①충분히 넓음 ②넓음 ③약간 좁음 ④매우 좁음		
노면 상황	①포장 ②자갈 ③비포장	장소구분	①옥내 ②옥외 ③옥내외
비탈길 등 경사	유·무	바닥의 단차등	유·무
주행로 폭 협소	유·무	높이제한	유·무
주행로가장자리위험	유·무	일단정지의 필요	유·무
장애물	유·무	밝기	①밝다 ②보통 ③어둡다(75勒스↓)

스키드로더 일일점검 체크리스트(예시)

장비No. : 전남이나0000 / 점검자 : 흥길동 / 점검일 : 2019년 9월 3주차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자	9/16	9/17	9/18	9/19	9/20	9/21	9/22
운전자 적정여부	- 운전자 자격 및 지정유무								
	- 운전자 교육이수 여부								
작동계통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이상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이상유무								
안전장치	- 바퀴 및 타이어의 이상유무								
	- 램프 등의 이상유무								
관리적 사항	- 부속장치(어태치먼트) 이상유무								
	- 전조등 및 후미등 이상유무								
	- 경보장치 이상유무								
	- 안전띠 설치 및 착용								
	- 전·후방카메라 작동상태								
	-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 작업계획서 작성 및 확인								
	- 유도자 배치 및 지휘여부								

점검결과 : 양호(O), 불량(X)

2. 스키드로더 신호방법(KS B ISO 16715:2014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99조, 제200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운전 중 주변 노동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는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에 유도자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위험작업 등급을 구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전문 신호수에 대해서는 신호수 면허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호 작업의 전문성을 확보가 필요하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상호 신호체계는 명문화된 것이 없으나, 한국 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에 크레인 수신호(KS B ISO 16715:2014)를 준용하여 일부 수정·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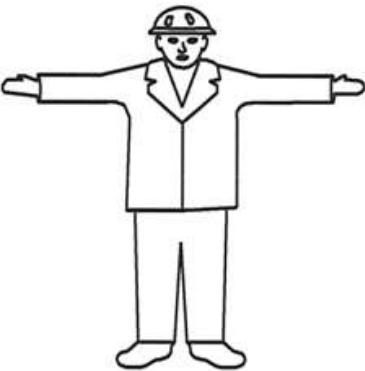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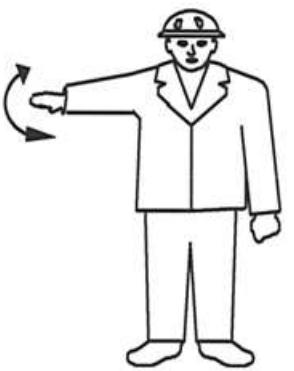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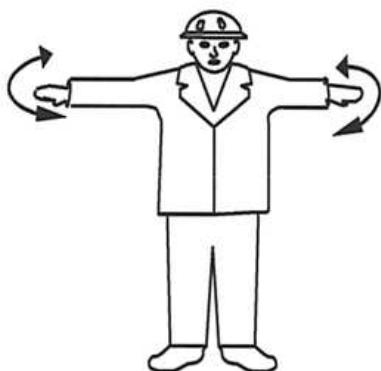
- 수신호는 다음의 요구 조건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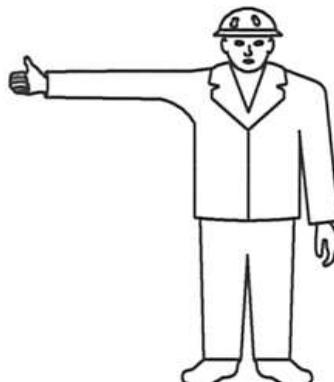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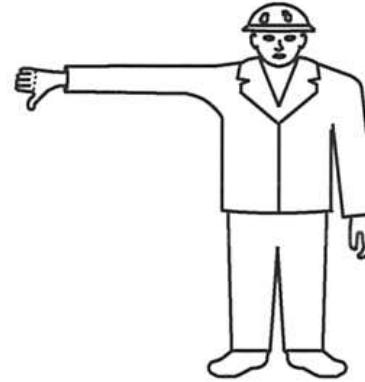
- ☞ 신호는 사용에 알맞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 ☞ 신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한다.
- ☞ 불특정한 한 팔 신호는 어떤 팔을 사용해도 수용되어야 한다.
(좌우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특정한 신호이다.)

- 신호수는 반드시

- ☞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 ☞ 운전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하며
- ☞ 하물 또는 장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 ☞ 운전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외는 단 한 가지로 비상정지 신호뿐이다.
- ☞ 적용 가능한 경우, 신호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수신호 방법(예시)

		
작업 시작	멈춤(보통 멈춤)	비상 멈춤(긴급 멈춤)
두 팔을 수평으로 뻗고 손바닥은 평면을 향하게 한다.	한 팔을 수평으로 뻗고서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팔은 수평을 유지하며 앞뒤로 움직인다.	두 팔을 수평으로 뻗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팔은 수평을 유지하며 앞뒤로 움직인다.
		
미동 혹은 최저속	포크(붐) 폭 확장	포크(붐) 폭 축소
두 손바닥을 마주치며 원을 그리듯 문지른다. 이 신호 후에 기타 해당 수신호를 적용한다.	양손을 앞쪽으로 뻗고(주먹을 쥔 상태) 엄지손가락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유지한다.	양손을 앞쪽으로 뻗고(주먹을 쥔 상태) 엄지손가락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유지한다.

주행 방향 표시	주행(멀어지는 방향)	주행(가까워지는 방향)
한 팔을 수평으로 뻗으며 손은 펴고,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게 하여 원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두 팔을 앞쪽으로 펴서 벌리고 두 손은 펴서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두 팔뚝을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인다.	두 팔을 앞쪽으로 펴서 벌리고 두 손은 펴서 손바닥을 위쪽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두 팔뚝을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인다.
		
포크(붐) 올리기	포크(붐) 내리기	작업 중지
한 팔을 수평으로 뻗고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한다.	한 팔을 수평으로 뻗고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양손을 신체 앞쪽 가슴 높이에서 모으고 움켜쥔다.

위의 신호방법(예시) 외에도 스키드로더 사용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통일된 신호기준을 마련하거나 무전기, 경광봉 등 작업환경에 따른 다양한 신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스키드로더 작업안전수칙

산업재해의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스키드로더 운전자가 작업 전,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 지켜야 할 작업안전수칙에 대해 제시하여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참조)KOSHA GUIDE C-48-2012 :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 일반안전사항

- 공통사항

- ☞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기계별 주용도외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전도, 전락방지를 위해 노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여야 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한다.
- ☞ 기계의 작업 범위내에 작업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 작업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 ☞ 운전석 이탈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조치 하여야 하며 버켓, 리퍼 등 작업 장치를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 ☞ 운전석 내부를 청결히 하고 오르내리는 발판 및 손잡이는 항상 깨끗하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모든 건설기계는 기계마다 장비일보에 작업명, 기계 조종원, 작업시간, 정비항목 및 정비회사명, 급유사항, 고장 및 이상유무 등 기계의 이력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용전 확인사항

- ☞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엔진 시동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가) 누수, 누유의 흔적 및 유압장치의 작동여부
 - (나) 무한궤도, 타이어, 기계장치 등의 이상 유무
 - (다) 근로자나 장애물 유무 등 작업장 주변 상황
 - (라) 변속레버의 중립위치 여부
 - (마) 주클러치 레버의 중립위치 여부
 - (바) 감압레버는 감압위치에 놓여 있는가 확인
 - (사) 연료레버는 저속회전 위치(1/4-1/2 정도)에 놓여 있는가 확인
 - (아) 주차용 브레이크 레버의 주차위치 여부 및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
 - (자) 연결차량의 연결상태 및 분리방지장치의 확인
 - (차) 주정차용 껌목 및 안전표지판등의 준비상태
 - (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 운전석으로의 승강시에는 설치된 트랩, 사다리 등을 이용하도록 하며, 뛰어 올라타거나 내리지 않도록 한다.
- ☞ 엔진 시동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가) 엔진이 냉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가속해서는 안된다.
 - (나) 엔진 시동후 저속회전을 하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압력계 및 수온계의 게이지 작동상태
 - ② 충전상태
 - ③ 경보등 점멸상태
 - ④ 누수, 누유 및 기타 이상 유무
 - (다) 전진, 후진을 시도하기 전에 주변의 근로자, 건설기계 및 장애물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시야가 가려진 경우에는 유도원을 배치하거나 운전석에서 내려와 건설기계의 하부 및 전·후방에 근로자나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장치 확인사항

- ☞ 전조등 : 건설기계에는 야간작업을 위한 전조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경보장치 : 건설기계에는 전후진시 및 작업시 등에 있어 안전확보를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헤드가드 :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운전석 위에 견고한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봄 전도방지 장치 : 봄을 올린 상태에서 사용 중 하물이 갑자기 탈락하거나 굴곡면 주행중에 흔들려 봄이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봄 전도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봄 기복정지장치 : 드래그라인, 기계식 크램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봄 기복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봄 각도를 80도 가까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하여 작업한다.
- ☞ 기타 안전장치 : 권상 브레이크 페달 잠금장치, 권상드럼 잠금장치, 봄 각도지시기, 전조등, 경보장치, 헤드가드, 앞 유리창 닦기, 제상(서리), 제무장치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당해 기계에 대한 구조 및 사용상의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시 유의사항

- ☞ 주행로의 지형, 지반 등에 의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이상소음, 누수, 누유 또는 부품, 조작레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 주행 시에는 버켓 등을 지상 40센티미터 정도로 들어 올려 주행한다.
- ☞ 정해진 주행속도를 지켜 운행하여야 한다.
- ☞ 언덕을 내려올 때에는 연료레버를 저속위치로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 ☞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부하 및 주행속도를 줄인다.
 - (가) 언덕을 올라왔을 때
 - (나) 화물을 싣기 위해 대상물에 접근할 때
- ☞ 방향 전환시에는 전진 방향측의 방향전환 클러치를 완만히 전환하고 급선회할 경우에는 전진 방향측의 브레이크를 작동한다.
- ☞ 내리막 경사지에서 방향전환을 할 때에는 브레이크가 충분히 걸리는 위치까지 레버를 옮겨야 한다.
- ☞ 기계의 작업범위 내에는 작업자를 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 ☞ 기계가 전선 밑을 통과할 경우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고, 저속으로 주행하며 노면 굴곡으로 인하여 봄(Boom)이나 로우프가 흔들려 전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전선과의 거리를 최소 2 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 경사지에서 하중을 실은 채로 오르내릴 때에는 버켓을 낮추어야 한다.
- ☞ 장애물을 넘어갈 때에는 전도에 주의하며 속도를 줄이고 신중히 주행하여야 한다.
- ☞ 연약지반에서는 부등침하로 인해 기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깔판 등으로 지반을 보강한 다음 통과하여야 한다.
- ☞ 경사지에서 잠시 정지할 때에도 버켓 등을 지면에 내린후 바퀴에 꼼목 등으로 확실하게 받쳐야 한다.
- ☞ 정지후 곧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버켓 등을 지면에 내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잠궈두어야 하며 경사지에서 정지할 때에는 기계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바퀴에 꼼목 등을 받쳐야 한다.
- ☞ 봄대를 조정할 때에는 주변 가공전선로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 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현장내 이동시에는 봄을 원위치에 내려놓은 상태로 이동하여야 한다.

○ 작업종료 후 정차 시 유의사항

- ☞ 건설기계를 지반이 단단하고 평坦한 장소에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우기시 침수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하며 벼켓 등은 지면에 내려 놓아야 한다.
- ☞ 브레이크는 완전히 건다. 다만 부득이하여 경사면에 세울 경우에는 바퀴에 꼼목을 확실하게 밟쳐야 한다.
- ☞ 엔진이 정지 중에는 봄과 벼켓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 일일작업 종료 시 운전석의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장치의 장착 및 취급의 경우 주의사항

- ☞ 해당작업에 능통하고 경험이 있는 책임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수행한다
- ☞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
- ☞ 암, 봄 등이 하강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지주, 안전블럭 등을 사용한다.
- ☞ 중량이 큰 작업장치는 이동식크레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혹결이 작업 등은 유자격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4. 스키드로더 관련 교육 및 자격기준

스키드로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스키드로더 관련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시행령 별표8, 별표8의2 참조)

- 스키드로더 운전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대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특별안전보건교육(시행령 별표8, 별표8의2 참조)

- 스키드로더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지게차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스키드로더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유사개념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13호-운반용 등 하역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컨베이어)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스키드로더 불포함]

나. 운전자 자격

○ 조종면허가 필요한 스키드로더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

○ 조종사 면허의 종류 및 취득방법(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별표20, 21)

5톤 이상	5톤 미만(또는 3톤 미만)
로더 운전기능사 취득[인력공단] ↓ 적성(신체)검사[지자체] ↓ 로더 조종면허 발급[지자체]	1) 5톤 이상 로더 조종면허를 가진 자 2) 로더 조종 교육과정 이수[지자체 지정] - 3톤 미만(12h) / 5톤 미만(18h) ↓ 로더 조종면허 발급[지자체]

IV

스키드로더 작업안전표준 및 위험성평가



IV

스키드로더 작업안전표준 및 위험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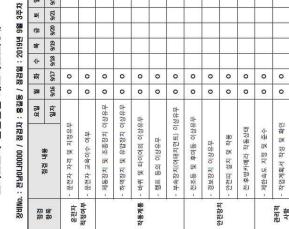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스키드로더 사용에 대한 안전한 작업절차(표준)와 위험성평가(4M)* 작성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 4M 위험성평가는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인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 면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발생 빈도와 피해 크기를 그룹화한 위험성평가 방법이다.

○ 4M의 항목별 유해·위험요인(예시)

항목	유해·위험요인
Machine (기계적)	◦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 방호장치의 불량
	◦ 본질안전화의 부족
	◦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물)의 결함
	◦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Media (물질·환경적)	◦ 작업공간(작업장 상태 및 구조)의 불량
	◦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발생
	◦ 산소결핍, 병원체,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 근로자 특성에 의한 불안전 행동
Man (인적)	◦ 작업정보의 부적절
	◦ 작업자세, 작업 동작의 결함
	◦ 작업방법의 부적절 등
	◦ 관리조직의 결함
Management (관리적)	◦ 규정, 매뉴얼의 미작성
	◦ 안전관리계획의 미흡
	◦ 교육훈련의 부족
	◦ 부하에 대한 감독·지도의 결여
	◦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미게시
	◦ 건강관리의 사후관리 미흡

그리트[Grit] 회수작업 표준[예시]

작업순서 No	작업내용	세부작업내용				확인	담당자	HSE	부서장
		제정일자 2015. 00. 00.	부서명	도장부	Rev. 4				
1 사전 점검	스카드로더 일정점검 체크리스트(부서) 	1-1. 스키드로더의 외관상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1-2. 엔진오일 및 연료를 확인한다. 1-3. 냉각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1-4. 에어필터 상태를 점검하고 오염시 청소한다. 1-5. 부속장치(바퀴, 포크 등) 연결부위를 확인한다. 1-6. 경음기, 경광등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7. 작업장 내 피스류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1-8. 작업반경 내 바닥상태 및 장애물 등을 파악한다. 1-9. 개인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한다. 1-10. 그 외 점검 사항(일일점검표)을 점검한다.	+ 점검 전 보안경 등 안전보호구 착용 + 소모시 보충 + 소모시 보충 + 필요시 비파괴검사 실시 + 인전장갑 착용 - 안전모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 일일점검표에 따른 체크 + 혼재작업은 월칙상 금지 + 조명 등에 의한 결림 주의 + 스카드로더 탑승상태로 조작 금지	+ 안전장갑 + 보안경 + 안전모 + 방진마스크 + 귀마개 + 안전화 + 비파괴검사장비 + 이동식 조명 + 에어호스 + 스카드로더 부속장치(포크 등) ○ 소화기					
2 그린트 회수작업		2-1. 전처리장 내 출입금지조치를 한다. 2-2. 조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장소(블록 하부 등)에는 조명을 추가 설치한다. 2-3. 전처리장 집진기를 가동한다. 2-4. 버켓 엘리베이터를 작동한다. 2-5. 스카드로더에 탑승한다. 2-6. 스카드로더의 시동을 건다. 2-7. 그리트 수거는 벽쪽에서부터 "ㄹ"자 형태로 실시한다. 2-8. 수거된 그리트는 슈트쪽으로 밀어낸다. 2-9. 후방 주행을 하는 경우 작업자 및 장애물 확인 후 주행한다.	+ 탑승 시 3타점 준수 + 시동기 별도정소 보관 + 후방주행 지양						

그리트[Grit] 회수작업 표준[예시]

작업순서 NO	작업내용	주요 확인사항 (+안전/-보건)		HSE	부서장
		확인	Rev. 4		
3	<p>3-1. 엘리베이터 1차 필터에 이물질을 제거한다.</p> <p>3-2. 그린트가 정상적으로 수거되었는지 확인한다.</p> <p>3-3. 버킷엘리베이터 및 집진기 작동을 정지시킨다.</p> <p>3-4. 에어호스로 장비 외관을 청소한다.</p> <p>3-5. 장비 외관 및 오일류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p> <p>3-6. 점검종료 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다.</p> 	+ 전원 차단 후 살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장갑 ○ 보안경 ○ 안전모 ○ 방진마스크 ○ 귀마개 ○ 안전화 ○ 비파괴검사장비 ○ 이동식 조명 ○ 에어호스 ○ 스키드로더 부속장치(포크 등) ○ 소화기 		
4	<p>4-1. 기존에 부착된 부속장치(버킷 포크 등)를 분리한다.</p> <p>4-2. 분리한 부속장치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p> <p>4-3. 교체하고자 하는 부속장치를 결합한다.</p> <p>4-4. 교체한 부속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p> 	<p>+ [장비 메뉴얼]의 부속장치 교체방법 참조</p> <p>+ 편 등의 적정 체결여부 확인</p> <p>+ 작동계통 점검 시 주변 확인</p>			

□ 그린트(Grit) 회수작업 위험성평가[예시]

작업 구분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의 안전조치	현재 위험성		개선기한	반도	강도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개선 확인
				반도	우험성						
사전 점검	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동유 등 부족에 의한 고장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인한 건강장해 경보기/경보음 미작동으로 부딪힘 장비 탈승 시 3타점 미준수로 넘어짐 장시간 운전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지정장소 외 주차로 타 장비와 부딪힘 급회전에 의한 전도/부딪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동유 시전/시후 점검 개인보호구 착용 운행 시 상시작동 3타점 준수 교육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주차장소 지정 인전교육 	1 1 1 3 2 2 1	3 3 4 6 4 4 8	운전석 외부 손잡이 설치	1	2	2		
그린트 회수 작업	기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킷 등 부속장치 교체 중 기임 운행 중인 장비의 구동부에 기임 운전석 내부로 날아온 물체에 맞음 운행 중 작업자/장애물과 부딪힘 버킷/화물 등 시야간섭으로 부딪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안전밸브 사용 - 보호구 착용 사전확인/출입금지조치 사전확인 	1 - 3 3 3	4 - 9 12 12	운전석 외부장치 조작 시 하차 안전문 설치 전후방 카메라 설치 전후방 카메라 설치	2	4	8		
작업 종료 물질/ 환경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 그리트(분진)에 의한 호흡기질환 퇴적된 분진에 미끄러져 넘어짐 조도 미확보로 부딪힘 그리트(분진)에 의한 시야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마개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 - 보안경 착용 	2 2 2 3 4	2 4 6 12 8	사전확인 및 외관청소 조도 불충분 시 추가 설치	1	2	2		
부속 장치 교체	관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일/정기 점검기준 미보유(미흡) 운전자 자격확인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전처리장 내 작업자/장애물 미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점검기준 보유 관리자 확인 일일 작성 관리자 확인 	1 1 1 2	3 4 3 8	장비물 등 반사판 부착	1	4	4		

제 10 장 예시 표준[예시] 작업설치(서포트, 반목설치) 표준[예시]

작업순서 No	작업내용	세부작업내용			주요 확인사항 (+안전/-보건)		작업준비 (장비, 자재, 치공구)	부서장
		부서명	제정일자 2015. 00. 00.	운반부	확인	담당자		
1	사전 점검	스카드로터 일정점검 체계리스트(8시) <small>상태표: 관리번호(0000) / 관리인(0000) / 일정표: 2015년 06월 20일자</small>	1-1. 스키드로터의 외관상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1-2. 앤진오일 및 연료를 확인한다. 1-3. 냉각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1-4. 에어필터 상태를 점검하고 오염시 청소한다. 1-5. 부속장치(바퀴, 포크 등) 연결부위를 확인한다. 1-6. 경음기, 경광등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7. 작업구간 내 피스류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1-8. 작업반경 내 바닥상태 및 장애물 등을 파악한다. 1-9. 평지에서 장비의 시험작동을 실시한다. 1-10. 그 외 점검 사항(일일점검표)을 점검한다.	+ 점검 전 보안경 등 안전보호구 착용 + 소모시 보충 + 소모시 보충 + 필요시 비파괴검사 실시 + 안전장갑 + 보안경 + 안전모 + 귀마개 + 안전화 + 비파괴검사장비 + 일일점검표에 따른 체크 + 시험작동 전 주변 확인 + 일일점검표에 따른 체크 + 봄에는 낮은 위치(지면에서 20cm가량 이하) + 조명 등에 의한 걸림 주의 + 유도자(신호수) 배치 + 모멘트에 의한 전도 주의 + 요철부 우회 또는 원회 등 안전조치 + 깨임 사고 발생위험 + 무전/호각 등 신호수단 활용 + 필요시 후방카메라 설치				
2	서포트 /반목 운반작업		2-1. 서포트/반목 보관장소로 이동한다.(무부하, 시야획보 양호상태) 2-2. 조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장소(블록 하부 등)에는 조명을 추가 설치한다. 2-3. 서포트/반목을 운반한다.(유도자 배치) 2-4. 화물의 형태에 따라 시야획보에 용이한 높이로 운반한다. 2-5. 지면이 고르지 못한 곳(요철 부위 등)에서는 서행한다. 2-6. 운행 중에는 운전자의 신체가 운전석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7. 사전에 파악된 구조물 또는 장애물 등을 우회하여 이동한다. 2-8. 신호수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정지한다. 2-9. 가급적 후방 주행을 지양한다.	+ 이동식 조명 + 무전기 + 스카드로너 부속장치(포크 등) + 소화기				

블록 운반지원[사포트, 반목설치] 작업 표준[예시]

작업순서 NO	세부작업 내용	주요 확인사항 (+안전/-보건)			작업준비 (장비, 자재, 차량구)
		부서명	운반부	HSE	
3	사포트 설치	KOSHA-2015-0000 제정일자 2015. 00. 00.	부서명 2019. 00. 00. 개정번호 Rev. 3	확인	부서장
4	반목 설치		3-1. 작업공간 내 장애물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3-2. 신호수의 신호(수신호, 무전 등)에 따라 시서히 이동한다. 3-3. 신호수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정지한다. 3-4. 공차로 이동 중에는 봄을 낮게 유지한다. 3-5. 지면이 고르지 못한 곳(요철 부위 등)에서는 서행한다.	+ 작업환경 내 신호수 위치 금지 + 무전/호각 등 신호수단 활용 + 봄대는 낮은 위치(지면에서 20cm가량 이하) + 요철부 우회 또는 원회 등 안전조치	○ 안전장갑 ○ 보안경 ○ 안전모 ○ 귀마개 ○ 안전화 ○ 비파괴검사장비 ○ 이동식 조명 ○ 무전기 ○ 스키드로더 부속장치(포크 등) ○ 소화기
5	Barge 작업		4-1. 마킹된 곳에 정확히 설치한다. 4-2. 혼자 작업을 금지한다. 4-3. 반목 등이 위에서 쓸어하지 않도록 급회전 등 급조작을 자양한다.	+ 부득이한 경우 정비의 작업방법 외에서 작업 + 낙하물 주의	
6	작업총료		5-1. 안벽과 Barge 간 램프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5-2. 연결부위 및 상부 등 요철에 주의하여 운행한다.	+ 유도자 또는 운전자 육안 확인 + 운반화물 낙하 주의	
			6-1. 스키드로더를 지정된 보관장소에 주차한다. 6-2. 봄을 하강하여 지면에 위치시킨다. 6-3. 장비 외관 및 오일류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 시동기 번남 + 지면에 위치	

블록 운반지원[서포트, 반복설치] 작업 위험성평가[예시]

작업 구분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제재형태	현재의 안전조치		현재 위험성		개선기한	반도	강도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개선 확인
			반도	강도	반도	강도						
사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동유 등 부족에 의한 고장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인한 건강장애 경보기/정보음 미작동으로 부딪힘 장비 탑승 시 3타점 미준수로 넘어짐 장시간 운전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지정장소 외 주차로 타 장비와 부딪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회전에 의한 전도/부딪힘 	작동유 시전/시후 점검 개인보호구 착용 운행 시 상시작동 3타점 준수 교육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주차장소 지정 안전교육 안전교육	1 1 3 4 2 2 4 4	3 3 3 4 6 4 4 4							
서포트 /반복 운반	인적											
서포트 설치	기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호장치 고장에 따른 사고 운전석 내부로 날아온 물체에 맞음 운행 중 작업자/장애물과 부딪힘 버킷/화물 등 시야간섭으로 부딪힘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 요철부위 과속 운행에 따른 충격 조도 미확보로 부딪힘(어간) 일일/정기 점검기준 미보유(미흡) 	작업 전/후 점검 비래 방호조치 실시 신호수 배지 신호수 배지 귀마개 착용 서행 교육 전조등 설치/작동확인 자체 점검기준 보유 운전자 자격확인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공간 내 작업자 미확인 작업공간 장애물 사전확인 미실시	1 1 3 4 2 4 8 2 3 3 4 12	4 4 8 8 4 4 4 4 9 9 12 3							
반복 설치	물질/환경적											
Barge 작업	관리적											
작업 종료												

V

현장 우수사례



V

현장 우수사례

□ 후방카메라 설치



□ 스키드로더 형광도색(장비 운전상태 인지 및 위치 확인)



□ 경광등 및 경고음

	
스키드로더에 부착된 경광등	경고음 발생장치

□ 스키드로더 운전자 및 점검

	
전담운전원 및 관리책임자 지정	스키드로더에 부착된 일일점검표

[참고자료]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참고자료(1) - 스키드로더 관련 법령(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 제31조(안전 · 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③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 ① 법 제33조 제3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 가.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나.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 ② 해당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자의 조치)

-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 받는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 가. 작업의 내용
 - 나. 지휘계통
 - 다. 연락·신호 등의 방법
 -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받은자가 기계등을 대여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51조(기계등을 조작하는자의 의무)

- 제50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p>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p> <p>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p> <p>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p> <p>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2매</p> <p>② 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자동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② 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p> <p>2. 5톤 미만의 로더</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소형건설기계	교육 내용	시간
1.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6(실습)
2.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 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12(실습)

비고

1.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하고, 교육생 1명이 1대의 장비에 규정된 시간을 탑승·승선하거나 건설기계의 조종작업을 위한 정상적인 조종위치에서 조종실습을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한다.
2. 조종실습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조종실습을 할 수 없다.
3. 조종실습은 해당 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강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기, 로더, 지게차, 불도저, 천공기 및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습 강사는 해당 기종 중 상위규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도 실시할 수 있다.
4. 이론 및 실습 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5. 이론교육의 강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 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중기운전)이 있는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6. 위 표의 굴착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7.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이론 및 실습시간의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쇄석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또는 준설선에 대해서는 실습장이 아닌 해당 건설기계가 설치된 다른 장소에서 실습을 할 때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8.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및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5. 로더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6. 29]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베켓,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8조(헤드가드) 사업주는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쇼벨(shovel), 로더(loader), 파우더 쇼벨(powder shovel) 및 드래그 쇼벨(drag shovel)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0조(접촉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봄·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봄·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5조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참고자료[2]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일부발췌)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정 1994. 6.18. 고시 제1994-28호

개정 2001. 1. 9. 고시 제2001- 9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고시 제2009-49호

개정 2012. 9.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0호

개정 2015. 9.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이동식 기계운반하역

제1절 준비

제45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이동식 기계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이동 중에는 항상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3. 급선회는 피하여야 한다.
4. 물체를 높이 올린 채 주행이나선회를 피하여야 한다.

5. 이동 중에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안전한 보조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말아야 한다.
7. 자격이 있고 지명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기의 점검정비는 반드시 실시하고 또한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9. 반드시 정해진 점검항목에 따라서 점검하여야 한다.
10. 연료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중지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1. 연료나 작업유가 새어나와 묻었을 경우에는 잘 닦아 두어야 한다.
12.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시 순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운전

제46조(시동 전·후 확인) 이동식 기계를 운전할 경우 시동 전·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어변속 레버 및 각 작용레버가 정위치, 종립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핸드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동 후에는 저속회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엔진의 회전음, 폭발음, 배기가스의 상황, 엔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기계의 작동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각 작동레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주행) 이동식 기계로 주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급출발,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한눈을 팔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행 중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려서는 아니 된다.
4.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방향을 바꿀 때에는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고 또한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6. 보행자나 작업 중의 근로자 또는 선행차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

7. 건널목, 교차로 및 건물의 출입구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입하여야 한다.

제48조(주차) 이동식 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할 때에는 다른 차량이나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반드시 핸드브레이크를 걸어두어야 한다.
3. 차에서 이탈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 키를 뽑아 두어야 한다.
4. 경사면에 주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륜에 고임목 등으로 고여야 한다.

제49조(하역) 이동식 기계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피가 작더라도 중량물인 때에는 완전히 허리까지 들어올려서 취급한다.
2. 공동작업은 작업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3. 허용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하물의 적재는 금하여야 한다.
4. 하물대에 사람이 탑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은 즉시 물체를 묶어야 한다.
6.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는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7.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제50조(작업종료) 작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를 하고 더러움이 심한 경우에는 물로 씻어야 한다.
2. 점검은 정해진 항목에 의해서 행하여야 한다.
3. 각 회전부를 손질한 다음 급유·주유하여야 한다.
4. 연료, 윤활유, 냉각수를 충만시켜 두어야 한다(겨울에는 냉각수 전부를 빼둔다. 다만, 부동액이 첨가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주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절 셔블로더

제64조(운전준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셔블로더가 정차된 장소 주위에 다른 근로자나 장애물이 없고 안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작업시작 전 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일반도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차량검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4. 작업에 필요한 공구(소화기, 삽, 와이어로프 등)를 장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5조(점검) 셔블로더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2. 점검장소는 다른 기계의 조작이나 작업에 지장이 없는 평坦한 곳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베켓은 반드시 작업지면에 내려놓고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에 베켓을 올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레버 블록을 걸어 놓음과 동시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베켓 낙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셔블로더의 하부의 점검은 피트, 검차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점검에 사용하는 수공구 등은 정해진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시동) 셔블로더를 시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어변속 레버나 하역용 레버가 중립의 위치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이드 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엔진 시동 후에는 공회전운전을 약 5분정도 함과 동시에 엔진의 회전음이나 폭발음 및 배기가스 등의 상황을 관찰하여 엔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종 게이지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67조(주행) 셔블로더의 주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세를 바르게 하고 차의 주위에 다른 근로자나 장애물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경적을 울려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
2. 출발할 때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빈차일 때에라도 반드시 낮은 기어에서 출발하도록 하여 기계에 무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3. 장시간 고속운전하거나 고속으로 선회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 장애물에 닿거나 전도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며 또는 급선회는 옆으로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전진기어에서 후진기어로 바꿀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바꾸어야 한다.

6.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전진으로 주행하고 내려올 때에는 후진으로 주행하며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경사가 급한 면을 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8. 셔블로더에는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9.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버킷의 조작) 버킷을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버킷의 끝단이 사람이나 장애물에 닿을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버킷의 끝단은 위를 향하게 하여야 한다.
2. 진동으로 버킷이 지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버킷을 지상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올린 상태를 유지하고 주행하여야 한다.
3. 버킷을 올린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4. 버킷 조작 중에는 운전석 밖으로 얼굴이나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5. 장애물에 버킷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주행하면서 버킷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버킷을 조작하는 장소는 평坦한 장소를 택하고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버킷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또한 버킷 밑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9조(정지) 셔블로더의 정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급브레이크를 걸면 미끄러지거나 버킷 안의 하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천천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2. 정지 후에는 변속레버를 중립에 놓고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두어야 한다.
3. 경사면에서 주차할 때에는 차륜이탈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이드 브레이크가 느슨하여 잘 걸리지 않을 경우에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정지 후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에는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엔진키는 반드시 빼서 보관하여야 한다.
5. 버킷 승강용 레버에 안전장치(레버 블록)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걸어 두어야 한다.
6. 정지했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불구하고 버킷은 지면에 내려두어야 한다.

제70조(작업시작 전 조치) 셔블로더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동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운전자의 행동범위를 이동식 안전망으로 둘러싸고 또 작업바닥에 선을 그어서 셔블로더의 작업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안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의 제한소도를 정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안의 구조물 등 장애물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경계색으로 표시하고 운전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연락, 신호에는 호루라기 등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셔블로더 작업) 셔블로더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하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하물의 중량을 확인하고 1회의 작업량을 정하여야 한다.
2. 작업에 필요한 공구(삽, 명석, 반침목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안에 장애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4. 작업면에 파인 곳이나 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깔판 등으로 보수하든가 방호물(공드럼 등)을 세워 두고 접근방지를 기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안에 가공전선이나 배관류 등이 통과하는 장소는 베켓조작 중에 감전되거나 그것들을 파손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협동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또 다른 작업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내용이나 안전대책에 대해서 연락, 통보하여 상호간 협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제72조(작업표준) ①트럭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표준에 따라야 한다.

1. 트럭이동의 경우

순 서	요 령
1. 전진해서 떠 올린다(셔블로더).	하물에 천천히 직진한다.
2. 후진한다(셔블로더).	트럭이 달 수 있는 간격을 충분히 두고 신호한다.
3. 후진한다(트럭).	천천히 쓸어 넣을 위치까지
4. 쓸어 넣는다(셔블로더).	베켓을 너무 올리지 않는다.
5. 후진한다(셔블로더).	천천히 트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6. 전진한다(트럭).	천천히 원 위치로

2. 트럭정지의 경우

순 서	요 령
1 정지시킨다(트럭).	60도의 각도로
2 전진해서 떠올린다(셔블로더).	하물에 천천히 직진한다
3 후진한다(셔블로더).	천천히 충분한 간격을 취하고
4 방향을 바꾸어 전진한다(셔블로더).	트럭에 직각이 되도록 쓸어 넣을 장소를 향해서
5 쓸어 넣는다(셔블로더).	버킷을 너무 높게 올리지 않는다.
6 후진한다(셔블로더).	천천히 원 위치로

제73조(떠올리는 방법) 버킷을 지면에서 떠올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속으로 돌입하는 작업은 위험하고 기계에도 무리가 되므로 금지하여야 한다.
2. 방향전환 중에는 버킷을 동작시키지 말아야 한다.
3. 하물을 한쪽으로 기울여 떠올리거나 경사방향으로 떠올려 담으면 편하중이 되므로 피하여야 한다.
4. 떠올려 담으면 버킷을 뒤로 당기어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하물의 단위중량을 생각하고 버킷에 떠올려 담을 양을 정하고 과하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벼운 것이라도 너무 많이 떠올리면 이송 중에 넘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4조(이송) 셔블로더의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송 중에는 방향은 물론 좌우 및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노면에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3. 버킷의 하물이 넘치지 않도록 신중히 운전하여야 한다.
4. 옥내작업의 경우에는 출입구의 상하좌우의 장해물이나 옥내의 기둥, 대들보 등에 주의해서 운행하여야 한다.
5. 지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속도를 늦추고 급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원근이나 지면의 요철을 판별하기 어렵고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신중히 상황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제75조(내리는 방법) 셔블로더로 하물을 내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물을 내리기 위해 정지할 때에는 셔블로더에 급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야 한다.
2. 버킷은 하물을 부리는 위치의 바로 위에서 일단 정지하고 난 후 기울여야 한다.
3. 분진이 비산하기 쉬운 하물일 경우에는 분진이 일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4. 트럭위에 하물을 부리는 경우에는 하물이 하물대를 초과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하물이 덩어리인 경우에는 부리는 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하역작업이 끝나면 버킷을 높게 올린 상태에서 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76조(작업종료 시 점검) 셔블로더의 작업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에 이상상태를 발견한 곳은 재확인하여야 한다.
2. 물과 기름의 누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브레이크 드럼, 휠 허브, 맷손 등이 과열되고 있지 않은가 조사하여야 한다.
4. 셔블로더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한 기재를 정리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안에 비산된 하물을 깎어모아 처리하고 지면을 청소해 두어야 한다.
6. 남은 하물은 형태가 변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나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하물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7. 더러움이 심할 때는 세차하여야 한다.

스키드로더 안전관리모델

2019년 11월 28일 인쇄

2019년 11월 29일 발행

발행인 : 최 수 봉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 화 : 061-288-8735

작성자 : 이 태 형

비매품